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2. 27.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 및 발의자 : 2019. 2. 18.(월), 양평호 의원 등 11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8.(화) (의안번호 제92호)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 2. 25.(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요지

가. 제안설명자 : 양평호 의원

나. 제안이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2조 ~ 안 제3조)
- 2)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3)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안 제5조 ~ 안 제6조)
- 4) 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 5)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안 제10조)
- 6)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구성 (안 제11조 ~ 안 제12조)

7) 위원 및 회의운영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7조)

8) 보험 및 교육 등 사항 (안 제18조 ~ 안 제20조)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기본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있음

3) 합 의 : 어르신아동복지과(돌봄지원팀)와 합의되었음

4) 입법예고 : 생략

3.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
----	--------------

- 「아이돌봄 지원법」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음.

「아이돌봄 지원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도 양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

- 최근 국가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0~5세) 지원, 누리과정(3세~5세) 지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많아졌음

즉, 사회적인 출산·양육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과 정책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초등교육 과정에서 방과 후의 돌봄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음. 양평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나. 안 제2조 정의 검토

- 본 조례안 정의 규정(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돌봄 아이”를 만 6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정의 하고 있음. “아동”을 「아동복지법」은 제3조제1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아이돌봄 지원법」은 제2조제1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다른 상황임. 조례안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동 규정을 적용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영유아”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제외 한 나이를 “아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다. 안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검토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4년 마다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요조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4년마다 세워지는 종합계획의 부족한 점인 구체성 및 현실성을 보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됨

라. 안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검토

-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23개소 있고 두 시설의 총 정원은 2,693명임. 강동구의 만 6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은 24,171명으로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정원으로는 11.14%만 돌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8년 노원·도봉·마포·성북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음. 강동구에서는 어르신사랑방의 공간을 공유하는 “꿈미소”를 운영하여 아이들 돌봄을 지원하였음
- 관내 돌봄 아동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꿈미소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의 돌봄 시설의 설치조항과 같은 조 제3항의 민간위탁 조항은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판단됨

마.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성동구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음. 광진구를 포함 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이고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시행 중임

<표 2>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제명	공포일자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1.09.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2.

바.	종합 검토의견
----	---------

-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인 양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는 2018년 말에 ‘강동구 온종일돌봄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사료됨
- 여러 상위법에서 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마련 등 관련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즉,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돌봄 지원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하므로 지속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